

민원 인쇄

인쇄자: 김명호

신청 정보

신청번호	1AA-2603-0572643
신청일	2026-03-15 08:03:30
신청인	김명호
신청인 구분	개인
주소	
진행상황 통지방식	전자우편 , 누리집(홈페이지)
민원답변 통지방식	전자우편, 누리집(홈페이지)
유선전화	
휴대전화	
전자우편	mkim1795@daum.net
보안 설정	아니요

민원 신청 내용

민원종류
제목
내용

일반민원

조직적인 은평구 주택비리에 대한 "임시 특별 조사관" 임명 신청

신청 이유는 다음과 같다

1. 비리근절의 유일한 방법, 관리소장 돈 받아 처먹고 비리 묵인하는 구청장, 국회의원, 구의원들 잡기 위해

2. 은평구청과 관리소장 임상현의 밀착 증거

업자 선정의 기본원칙이 경쟁 입찰임에도 불구하고, 입찰은 거의 없고 소위 뒷돈(리베이트) 해먹기 쉬운 "수의계약" 대유행, 즉 관리소장이 지꼴리대로 업자 선정하여 부풀린 가격 지불하는 [형법] 제355조(배임) 횡행하고 있다.

(1) 약착같이 수의계약하기 위해, 벌이는 대표적인 것 중 하나가 "쪼개기/분할" 계약

수의계약(5백만원) 등의 계약금액 상한선 규정한 법조문 피해가는 쪼개기 계약 근절하기 위하여

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

① [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] 수의계약 대상 제6호의 단서 조항과

[국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] 제68, [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] 제77조에 쪼개기 계약 금지 규정하였고

② 대법원도 "동일한 공사 쪼개기 계약은 총액으로 법 위반 판단해야"한다고 판결(자료3, case.pdf)

국가적으로 쪼개기 근절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데... 그에 협조하기는커녕

(2) 은평구청은 쪼개기 계약 권고 및 탈세 권장

지난 2.20일 입주자 대표회의에, 대청그린웍스의 기존계약(방역관리+수목방제) 재계약 의결주문하면서 방역관리와 수목방제를 "분할" 계약하겠다고며 임상현이 제출한 [안건4](자료1, 자료2)에 의하면

자료1에는 "구청주무관 권고사항", 대청그린웍스 제출 자료2에는 버젓이 "면세"라고 기재. 탈세 목적의 쪼개기 계약 ⇒ 탈세해서 상납하라는 거 아냐?

3. 국토교통부의 무능력

(1) 허구헌날 비리 많다며 피래미만 잡고는 법 제/개정해야 한다는 등 개소리

떡고물 생길 세금유용 건수 만드는 거냐? 지키지도 않을 법들 만들면 뭐하나?

[공동주택 관리법], 특히 [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] 제17조(증빙서류) 제7호 적격증빙, [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] [수의계약 대상] 등 잘 만들어져 있더군. 이거면 충분해!

(2) 입증된 무능력

[공동주택 관리법] 제93조의 2 위반하며 "은평구 비리 신고"를 부득부득 은평구로 이송하여 구청주무관 안산옥*으로 하여금 위법부당한 답변이나 하게 만드는
꼬락서니만 봐도 니들의 무능력은 입증된 거야

그래서 내가 무료 자원 봉사하겠다는 거다.

피래미 돈 받아 처먹고 비리 묵인하는 고위 공무원들 잡지 않고는 수의계약 비리근절 못한다

비리 구청장, 국회의원, 구의원들 한번 잡아 보자.

수정/보완 자세한 것 ⇒ <https://seokgung.com/corrupt9.htm#03142026>

2026.3.14

김명호

* 3.12일(오후 3-4경), 통화 끝날 때까지 문제없다던 은평구청 안산옥이

13일(오전 6:48경) 안산옥의 비리신고 3시간 후, 오전 10시경 전화로 지가 잘못했다며 다시 답변하겠다고 하더군

개 어리버리한 거로 봐서는 지가 알아낸 것 같아 보이지 않는데, 니들이 비리신고 뚱겨줬냐?

첨부 자료

- 1. "구청주무관 권고사항"이라며 방역관리+수목방제의 기존계약을 쪼개기 계약하겠다는 임상현의 의결 주문
- 2. 쪼개진 방역관리에 당당히 "면세"라고 기재한 대청그린웍스의 견적서
- 3. 대법원 판결 "동일한 공사 쪼개기 계약은 총액으로 법 위반 판단해야

첨부 파일

자료2.jpg 자료1.jpg case.pdf

처리기관 정보

처리기관	국토교통부 (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택건설운영과)
처리기관 접수번호	2AA-2603-0592729
접수일	2026-03-16 08:41:25
담당자(연락처)	안선형 (044-201-4898)

처리에정일

2026-04-02 23:59:59

1차 연장 기간: 7 일, 종료예정일시 : (변경전) 2026-03-24 23:59, (변경후) 2026-04-02 23:59

- 사유 : 관련 법령 확인 및 검토에 시간이 추가로 필요해 민원처리기한을 연장하오니 양해바랍니다.

- 연장결정일 : 2026-03-24 13:59:13

※ 민원처리기간은 최종 민원 처리기관의 접수일로부터 보통 7일 또는 14 일입니다. (해당 민원을 처리하는 소관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)